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19. 10. 14.> (앞 쪽)

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(변경승인) 신청서

처리기간
40 일

신 청 인	성 명		생년월일(법인 등록번호)	
	업 체 명		전화번호	
	주소 또는 소재지			

신 청 내 용							
사업 명칭		사업 목적		사업 위치			
시행면적		시행방법		시행기간			
토지이용 현황(㎡)	지 목 별						
	면 적						
토지이용계획(㎡)	용 도 별						
	면 적						
기반시설 계 획	시 설 별						
	개 요						
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계획	시 설 별						
	관리계획						
변경 내용							
변경 이유							

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50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·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(변경승인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
특별시장·광역시장·
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
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	수수료
	1. 위치도 2.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(用地圖) 3. 건축허가의 신청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4.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(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합니다) 5. 개발한 토지·시설 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 6.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의 환승시설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7. 사업시행지역의 토지등의 매수·보상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8.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과 소유자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9.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 등에 관한 계획서 10.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1.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8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해역이용협의서(공유수면매립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2.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거나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교통영향평가서 13.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	수수료 없 음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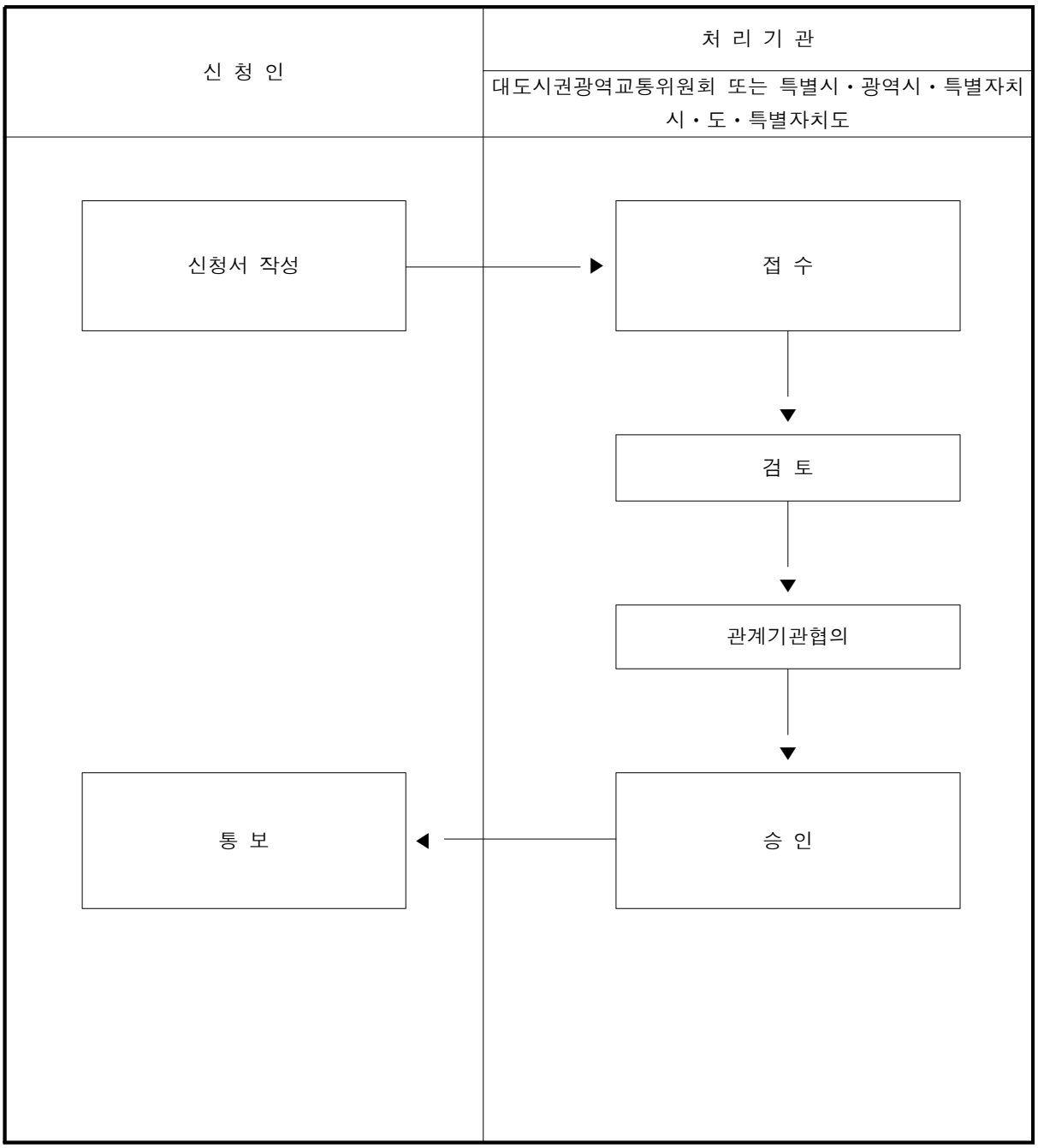
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. (뒤 쪽)